

전라북도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결정

사건명 19-학인-00004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청인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학교 ○-○)

피신청인 ○○○(○○○○학교 교사)

주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해당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인권교육(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을 최소 4시간 이상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위와 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적절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또한, 학생들도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피신청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담 등의 치유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9. 7. 15.(월)

나. 신 청 인 : ○○○(피해자의 아버지)

다. 피해자 : ○○○(○○○○학교 ○-○)

라. 피신청인 : ○○○(○○○○학교 교사)

마. 구제신청 요지

2019. 7. 8.(월) 2교시경 피신청인이 상담실과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끊리고, 목덜미를 잡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 주장

2교시 시작 후 피신청인이 상담실로 가게 하여, 우유 사건을 묻다가 소리치면서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끊게 하고, 손들고 있게 했다.

엄마가 피해학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고 말하였고, 재연하라고 신발장까지 피해학생을 목을 잡고 끌었다.

피신청인은 재연하고 다시 상담소로 목을 잡고 끌고 갔고, 복도 중간 쪽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이씨’라고 욕을 했더니 피신청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음. 이후 기분이 너무 나빠서 피해자가 ‘씨○’이라고 작게 욕을 했다.

다시 상담실로 와서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욕했냐고?’ 말해서 피해자가 욕했다고 답했더니, 피신청인이 우유를 땅바닥에 던지고, 이후 의

자를 바닥에 던졌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무릎을 끓게 했다.

이후 반으로 가서 피신청인이 자기가 한 거 미안하다고 계속 설명하고 사과했고, 피해자도 욕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나. 피신청인 주장

2019. 7. 5.(금) 오후 경 피해 학생이 학교 교문 근처 문방구 옆으로 우유를 던진 것을 학급회장이 단체톡으로 알려주었는데 당시에는 금요일 하교 이후라서 월요일에 학생을 지도하려고 했다.

2019. 7. 8.(월) 2교시경 ○-○반 교실 옆 상담실에서 처음에는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고 피해 학생의 어깨를 잡고 무릎을 끓리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피해 학생에게 엄마가 학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선생님 요새 체벌하면 안되죠, 그런데 ○○이 지도하면서 체벌해도 되요”라고 피해학생의 엄마가 말씀을 하셔서, 학생이 지도가 안되고 자꾸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학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럼 왜 우유가 떨어졌냐”고 말하면서 피해 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상담실에서 복도 신발장까지 끌고 갔다 왔다는 것은 상담실에서 신발장(3.5층에 있음)까지는 약 2~30미터 정도 되고, 이 당시에는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학생의 뒤에서 따라가면서 약간 밀었던 것은 있지만, 목덜미를 잡고 간 것은 아니다.

피신청인은 상담실 앞에 도착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았는데, 멱살이 잡힌 피해 학생이 “씨○”이라고 욕설을

하여 상담실 안으로 밀어넣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우유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피해 학생의 반대편 쪽으로 던졌다.

피해 학생이 상담실에서 무릎을 끓리고 있던 시간은 우유를 던진 상황을 재연하기 전 처음에만 5분정도 무릎을 끓게 하였고, 이후 다시 상담실에 와서는 무릎을 끓고 있는 게 아니고 서있었다.

피해학생 어머니와 통화하고 나서, 피해학생에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멱살을 잡은 것과 의자를 집어 던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도 울면서 ‘죄송해요’라고 사과를 했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학생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9. 7. 8.(월) 2교시경 ○-○ 교실 옆 상담실에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같은 달 5.(금) 오후경 4층 복도(○-○교실 복도) 밖으로 우유를 일부러 던졌는지를 물었다.

2) 피해학생이 실수였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학생의 어깨를 잡아 무릎 끓게 하고, 손을 들라고 하였다.

3)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의 거짓말을 바로 잡으려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4층 상담실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신발장까지 피해학생을 데리고 갔다.

4)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면서 실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정황상 피해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5)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을 다시 상담실로 데리고 갔고, 상담실 문 앞에서 피해학생이 ‘씨○’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상담실로 들어가도록 밀어 넣었다.

6) 상담실에서 피신청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유를 상담실 바닥에 던졌고, 상담실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

7) 피신청인이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상담실에서 나와 피해학생 어머니와 전화통화(20여분)를 하였고, 상담실로 돌아와 피해학생에게 멱살을 잡고 의자를 집어 던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해학생도 욕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나. 판단

1) 총론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21조도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멱살과 목을 잡고 끌고 다녔는지 여부

피해학생은 인정사실 1), 2)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멱살은 잡지 않았고, 어깨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학생은 인정사실 3)항, 5)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발장 까지 목을 잡고 끌었고, 다시 상담실로 목을 잡고 끌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목을 잡고 끌지 않았고, 학생 뒤를 따라가면서 약간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장이 서로 다르고, 목격자 또는 목을 잡아 끈 상처(흔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의 '피신청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목을 잡아 끌고 다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학생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인정사실 2)항 '피해학생의 어깨를 잡아 무릎을 끓게 하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한 행위', 인정사실 5)항 '피해학생의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상담실로 밀어 넣은 행위', 인정사실 6)항 '상담실 바닥에 우유와 의자를 집어 던진 행위'를 살펴본다.

먼저 인정사실 2)항의 행위는 강제로 무릎을 끓게 하고 손을 들도록 하였으므로 '간접체벌'에 해당하며, 인정사실 5)항의 행위는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므로 '직접체벌'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6)항의 행위는 학생이 보는 앞에서 우유와 의자를 던졌으므로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정신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러한 폭력 행위로 피해학생이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좌절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4) 소결

이 사안은 교사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한 학생을 생활교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학생의멱살을 잡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생활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에 맞아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 사안은 교사가 교육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인정사실 7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과 교사는 서로의 감정적인 행위(학생의 욕설, 교사의 폭력 등)를 사과하고 화해하였다. 또한, 사안이 발생한 즉시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 생활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분명하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즉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알린 점은 이 사안 판단의 참작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을 신분상 처분하기보다는 특별인권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우유를 복도 밖으로 던진 학생의 행위,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의 행위 등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담 등의 치유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2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정현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生存權)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